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12. 6.21 개정 2013. 7.24 시행 2013. 7.26 개정 2015.11.20 시행 2015.12. 7 개정 2016. 7. 1 시행 2016. 7. 1 개정 2021. 3.24 시행 2021. 3.25 개정 2022. 8.24 시행 2022. 9. 1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- 제2조(적용원칙) ①임원의 선임은 관련 법률의 취지와 규정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.
 - ②선임된 임원은 공사의 설립목표의 달성,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임원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하여 관련법, 시행령, 정부지침 및 정관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의하다.

제 2 장 임원추천위원회 운영

- 제4조(임무)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5.11.20>
 - 1. 정관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장, 상임감사,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임원 후보자를 모집, 심사하고 최종 후보자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.
 - 2. 이사회에서 작성한 경영계약서에 대하여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고 자 하는 자와 계약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, 필요한 경우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 일부를 변경하여 그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한다.
 - 3. 기타 이사회에서 임원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뢰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·의결한다.
- 제5조(구성) ①이사회는 임기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정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이전에 구성하고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 - ②위원회는 임원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임원 직위 결원이 여러명이고, 그 결원 발생 예정시기가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③위원회는 이사회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단, 정관 제1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여 비상임이사에 임명되는 사람(이하 "노동이사"라 한다)은 제7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 위

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22.8.24.>

- ④위원회 위원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에서 15인 이내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하되,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 정수의 3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으로 한다. <개정 2015.11.20>⑤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, 경제계, 언론계, 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인이포함되어야 한다.
- ⑥임원추천회 위원은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되 성별·지역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,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%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3.24.>
- ⑦공사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. 다만, 비상임이사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 <이동 2021.3.24.>
- ⑧위원회는 최종 추천한 임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자의 임명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기능이 종료된다. <이동 2021.3.24.>
- ⑨제5항의 공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직급별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복수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 단, 추천 절차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가 공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. <신설 2022.8.24>

- 제6조(운영)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인 비상임이사 중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자,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, 위원회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한다.
 -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7조(의무) ①위원회는 공사 사장으로서 기업경영과 공사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,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사 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.
 - ②위원회는 공사 이사와 감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, 능력을 갖춘 사람을 사장이 아닌 이사나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.
 - ③위원 및 추천과 관련된 관계자는 위원회의 공식 회의석상이 아닌 장소에서 후보자 또는 이해 관계자와의 개별적인 접촉을 금하여야 한다.
 - ④위원회 위원은 후보자 모집 및 추천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제8조(임원 후보자의 모집) ①임원 후보자의 모집은 임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, 추천방식, 공개모집·추천방식 병행의 3가지 방법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한다. 단, 사장의 경우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

집·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.

- ②위원회는 임원 후보자의 모집,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- ③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되, 그 모집기간을 1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- ④추천방식에 의해 임원 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, 관련학회·단체, 인사혁신처(국가인재 DB), 위원회 위원의 추천 등의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. <개정 2013.7.24.> <2016.7.1>
- ⑤제4항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개모집시와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
- ⑥임원 후보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방송 통신위원회·인사혁신처 및 기획재정부에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7.24.> <2016.7.1.>
- ⑦노동이사 후보자의 경우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5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, 정부지침에 따라 모집한다. <신설 2022.8.24.>

제9조(이해관계 임원의 참여제한)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·

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시기 임원직위의 공개모집 또는 추천방 식에 의한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10조(임원 후보자의 자격요건) ①임원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1.20.><개정 2022.8.24.>

1. 사장

- 가.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
- 나. 경영 및 방송·광고 관련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
- 다.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
- 라.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

2. 상임이사

- 가. 경영 및 방송·광고 관련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
- 나. 리더십과 조직관리능력
- 다.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
- 3. 비상임이사
 - 가. 경영 및 방송·광고 관련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
 - 나.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

4. 감사

- 가.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
- 나.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
- 다. 방송·광고 관련 분야의 업무 이해도

- ②감사 후보자는 제1항 제4호의 자격요건과 더불어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30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 춘 사람이어야 한다. <신설 2022.8.24.>
- ③노동이사 후보자는 공사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여야 한다. <신설 2022.8.24.>
- 제11조(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) 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를 준용한다.
- 제12조(심사기준, 방법 및 절차) ①위원회는 응모자·추천된 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한다. 단, 비상임이사의 경우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 - ②지원자의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 - ③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평가항목, 문항별 배점 등 심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전항의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.
 - ④공개모집과 추천을 병행하는 경우 심사기준과 방법, 절차 등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.
- 제13조(최종 후보자의 추천) 최종 임원후보자는 복수로 임용권자에게 추천하되, 구체적인 인원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다.
- 제14조(제출서류) 임원 후보자로 응모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지원서
 - 2. 자기소개서

- 3. 직무수행계획서
- 4. 기타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정한 자료
- 제15조(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모자·추천된 자에 대한 심사에서 제척된다.
 - 1.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응모자·추천된 자
 - 2. 위원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,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응모자·추천된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응모자·추천된 자
 - 3.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·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응모자·추천된 자
 - ②응모자·추천된 자는 특정한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.
 -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응모자·추천된 자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.
- 제16조(간사 및 서기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인사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.
 - ②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지원한다.
 - 1. 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
 - 2.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
 - 3.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업무

- ③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1인의 서기를 두며 인사담당 팀장으로 한다.
- 제17조(회의록) ①위원회 회의록은 간사의 책임 하에 개최일시, 장소, 참석자 명단, 회의전말 등을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토록 해야 한다.
 - ②회의록 및 관련 서류 등은 간사가 영구 보관한다.
 - ③회의록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절차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나,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, 모집·심사·추천 등 단계별 임원 후보자 명단, 개인별평가표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- 제18조(협조요청)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19조(수당)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20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정하여진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률, 시행령, 정부지침 및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3.7.24.>

이 규정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5.11.20.>

이 규정은 2015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6.7.1.>

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1.3.24.>

이 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2.8.24.>

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

지원자에 대한 심사기준

구 분	세 부 기 준
경영 및 방송·광고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 및 이해	o 경영 및 방송·광고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o 경영·경제·행정·법률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
공사의 공익성과 미션, 비전에 대한 이해도, 실행의지 및 역량	o 공사의 공익성, 비전 및 미션에 대한 이해도 o 뚜렷한 경영철학과 전략적 사고로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 지향적인 의지 및 능력 o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경험, 자질
임원로서의 자질과 능력	o 모범적인 행동과 합리적인 판단력, 청렴성으로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질 o 임원으로서의 결단력, 리더십 및 위기관리 능력
직무수행계획의 타당성	o 지원 직무에 대한 이해 정도 o 향후 직무수행 계획에 대한 비전과 실행가능성, 추진의지